

## 법과대학 학회 · 동아리 관련 규정

### 제 1조(설립)

① 학회 및 동아리는 학생자치활동의 일환으로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으나,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학회 및 동아리는 명칭, 설립목적, 회원 및 임원의 구성과 인적사항, 활동계획, 재정운영계획, 회칙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.
2. 학회 및 동아리는 최소 10인 이상의 재학생으로 구성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다.
3. 학회 및 동아리는 반드시 지도교수를 위촉하여야 한다.
4. 학회 및 동아리의 설립목적 및 활동 방향은 다른 학회 또는 동아리와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.

### 제 2조(절차)

① 학회 및 동아리를 설립하였을 때 설립요건을 기재한 설립신청서에 회원의 가입 신청서를 첨부하여 매년 10월에 지도교수 확인을 받아 행정실에 신고하여 차기년도 지원 여부를 심사 받는다.

② 학회 및 동아리는 법과대학의 보직자회의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된다.

### 제 3조(활동 및 지원)

① 학회 및 동아리의 활동은 학칙 및 내규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본래의 설립취지에 따라야 한다.

② 학회 및 동아리는 구성원 학생들의 회비와 학생지원비로 운영한다.

③ 학회 및 동아리의 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할 경우, 학회 및 동아리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행정실에 제출한다.

④ 학회 및 동아리에 대한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회원수에 따라 1인 기준으로 2만원을 지원하되, 연간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60만원 범위 내에서 심사하여 차등 지원한다.

#### 제 4조(의무)

① 학회 및 동아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활동사항(증빙자료 첨부)을 제출하고 차기년도 활동계획서, 예산계획서는 당해 년도 1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학회 및 동아리는 대표자 및 구성원의 변경, 중요한 행사 등에 대하여 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한다.

#### 제 5조(해산)

① 학회 및 동아리를 회원 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경우 즉시 지도교수 및 행정실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학회 및 동아리의 활동 내용이 원래의 설립취지에 따르지 않거나 활동 계획서와 달리 활동이 부진할 때 기타, 학교 규정에 위배되는 활동 등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할 때, 전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보직자 회의 의결로 해당학회 및 동아리를 해산시킬 수 있다.

#### 제 6조(시상)

법과대학장은 학회 및 동아리의 활동 내용이 우수하거나 교내 및 외부행사에서 수상한 경우에는 해당 학회 및 동아리에 표창과 부상을 수여한다.

#### 제 7조(부칙)

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